

표준투자권유준칙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제정 2009.02.04

개정 2009.10.07

개정 2010.12.01

개정 2013.10.22

개정 2015.08.25

제 1 편 총칙

제 1 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0 조 제 1 항에 따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과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과생상품 : 장내과생상품 및 장외과생상품
나. 법 시행령 제 52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 3 조(투자권유 및 판매의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은행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편 투자자 구분 등

제 4 조(방문 목적 확인)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은행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 3 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6 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46 조제 2 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 3 항(적합성의 원칙)에 따른 의무를 은행이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 120 조제 1 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 132 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4.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7 조(과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원칙])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과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제 1 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과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 10 조에서 제 12 조까지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제 4 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1 장 투 자 자 정 보

제 8 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 1 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제 1 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투자자정보확인서의 투자성향 평가결과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 3 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6. 임직원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7.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 2 호의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등을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 9 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거나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최대 36 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 1 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은행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직원등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4. 자금부에서의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는, 투자자정보에 대해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다만 제 14 조에 따른 상품설명서 (Indicative Term Sheet) 상에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을 시 투자자가 기 제공하였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상의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 거래 시 확인받아야 한다.

제 2 장 투 자 권 유

제 10 조(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등은 은행이 정한 <별표 제 1 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등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다 완화된 별도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 11 조(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임직원은 개인인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 10 조 제 1 항에 따른 기준과 함께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등을 추가로 고려한 <별표

제 2 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장외파생상품이외의 파생상품 등)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 가. 위험회피 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 제 3 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장외파생상품)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 신탁계약

① 법 제 103 조제 1 항제 1 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② 법 제 103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마. 투자자(법 제 72 조제 1 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바. 관계법령등 및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제3장 설명의무

제 14 조(설명 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및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 (이하 “투자유의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2. 임직원등은 제 1 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 123 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전에 교부하는 경우

5. 임직원등은 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 15 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용
 -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 라.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마.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 15 의 2.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4 조제 1 항에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 나. 상각 전환의 사유 및 효과

- 다.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라.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마.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 바. 사채의 순위

제 5 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 16 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은행은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 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단,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별표 제 4 호>의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2. 은행은 제 1 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3. 은행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은행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 6 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 17 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1.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나. 고객이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다. 고객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수령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2. 임직원등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손실보전등의 금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 103 조제 3 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 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 19 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 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2.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은행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당한 권유 금지

-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임직원은 법 제 55 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 71 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과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 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 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 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 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은행이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은행이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사.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이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은행이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아.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키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차.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이용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 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은행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은행이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업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사의 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카. 법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 4-73 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 5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 1 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제 1 항의 각 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 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 21 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은행이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 3 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별지 제 1 호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별지 제 2 호	장외과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별표 제 1 호	적합성 판단 기준
별표 제 2 호	적합성판단 기준(장외과생상품이외의 과생상품 등)
별표 제 3 호	적합성판단 기준(장외과생상품)
별표 제 4 호	장외과생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

<별지 제 1 호>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고객성명 :

고객번호:

직 원 명 :

작성일: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관?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문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은행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위험에 대한 고객님의 성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섹션 1 - 투자위험에 대한 고객님의 일반적 투자성향

투자위험성향 전반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투자위험에 대한 고객님의 일반적인 성향을 조사합니다. 일반적 투자성향은 고객님의 실제 투자성향과 상이할 수는 있으나 고객님의 적합한 투자위험 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p>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p>	<p>a. 76세 이상 또는 18세 이하 b. 66세 ~ 75세 c. 56세 ~ 65 세 d. 46세 ~ 55 세 e. 19세 ~ 45 세</p>
<p>2.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에 투자하신 경험이 몇 년 정도 되십니까? 투자상품이란 가치 변동 상품으로 주식, 펀드, 외화, 파생상품, 모집형 상품, 워런트, 옵션, 선물 및 변액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p>	<p>a. 투자경험이 전혀 없음 b. 3년 미만 c. 3 ~ 6년 d. 7년 ~10년 e. 11년 이상</p>
<p>3. 오른쪽의 투자 상품들 중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상품이 있습니까? ※ 상품은 복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점수 산정시에는 점수가 가장 높은 답변으로 산정합니다.</p>	<p>a. 현금, 예금, 양도성 예금, MMF b. 채권, 채권형 펀드 c. 외화, 혼합형 펀드, 원금일부보장 ELS d. 주식, 주식형 펀드, 원금비보장 ELS, 변액보험, 파생상품 e. 옵션, 선물, 워런트</p>

<p>4. 고객님께서서는 투자가 가능한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제외) 중 대략 몇 %를 가치 변동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 투자상품의 예시는 질문 2번 문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p>	<p>a. 0% b. 0%초과 ~ 10%이하 c. 10%초과 ~ 25%이하 d. 25%초과 ~ 50%이하 e. 50%초과</p>	
<p>5. 투자상품의 가치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데 이를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고객님께서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수준까지의 변동성을 감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재 투자해야 할 자금에 대한 감내 수준이 아닌, 일반적으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a. ± 5% 범위의 변동성 b. ± 10% 범위의 변동성 c. ± 15% 범위의 변동성 d. ± 20% 범위의 변동성 e. ± 20% 범위를 초과하는 변동성</p>	
<p>6. 고객님의 월소득에서 투자 또는 저축이 가능한 자산의 비중은 몇 %입니까?</p>	<p>a. 0% b. 0%초과 ~ 10%이하 c. 10%초과 ~ 25%이하 d. 25%초과 ~ 50%이하 e. 50%초과</p>	
<p>7. 가치 변동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 보통 어느 정도의 투자기간을 계획하십니까? ※ 투자상품의 예시는 질문2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p>	<p>a. 1년 미만 b. 1년 ~ 3년 c. 4년 ~ 5년 d. 6년 ~ 10년 e. 11년 이상</p>	
<p>8. 미래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몇 달분의 가계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계십니까? 이 자산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또는 적절한 수수료를 지출하여 손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금이어야 합니다. ※ 펀드 또는 저축상품에 투자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적정자산 보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적정자산이라함은 예를 들어 최소 3개월 분량의 가계지출자금, 3-6개월 분량의 개인지출자금 등입니다.</p>	<p>a. 미래의 예기치 못한 상황을 위한 여유자금을 보유하지 않음 * b. 3개월분 미만 c. 3개월 ~ 5개월분 d. 6개월 ~ 8개월분 e. 9개월분 이상</p>	
<p>투자위험에 대한 <i>일반적</i> 투자성향 점수: 문항 1 2 3 4 5 6 7 8 점수 () () () () () () () ()</p>	<p>총점</p>	

점수별 투자성향 구분

11점 이하	위험 회피형	12-19점	보수형	20-28점	안정 성장형	29-35점	성장형	36-40점	공격형
--------	--------	--------	-----	--------	--------	--------	-----	--------	-----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기초로 산정한 고객님의 일반적 투자성장형은 _____ 입니다.
투자성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미는 섹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섹션 2 - 구체적 투자성향 및 투자목표

현재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자금을 대하여 고객님의 감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 수준을 평가하며, 이는 고객님의 현재 투자 목적을 검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자금을 대하여, 아래 문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1. 고객님의 투자 목표는 무엇입니까?	a. 재산증식 c. 자녀 학자금 마련	b. 노후자금 마련 d. 기타 ()
2. 현재 투자 가능한 자금을 대해 계획하고 계신 투자기간은 얼마입니까?	a. 1년 이하 c. 5년 이하 e. 11년 이상	b. 3년 이하 d. 10년 이하
3. 고객님의 현재 투자하실 자금의 투자 목표(예. 학비, 장기저축, 노후대비자금 등)를 고려해 볼 때, 섹션 1에서 평가된 고객님의 일반적 투자성향이 이번 투자의 목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일반적 투자성향과 대한 구체적 투자성향이 동일합니까?)	a. 예 b. 아니오	
4. 만약 위 3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하셨다면, 섹션 1에 명시된 위험에 대한 투자성향 도표를 참고하시어, 현재 투자하려는 자금을 대해 고객님의 생각하시는 스스로의 투자성향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a. 위험회피형 b. 보수형 c. 안정성장형 d. 성장형 e. 공격형	

섹션 3 - 요약·정리

섹션 2의 3,4문항을 바탕으로 조사한 현재 고객님의 투자하시려는 자금을 대한 고객님의 구체적 투자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위험성향		투자성향 정의
<input type="checkbox"/>	위험회피형	투자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십니다. 투자 위험이 없는 상품이 적합합니다. 저축성 생명보험상품의 가입을 선호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중도 해약시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보수형	투자원금손실의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십니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다.
<input type="checkbox"/>	안정성장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성향입니다. 투자원금의 가치가 변동되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성장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합니다.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성향입니다. 투자원금의 가치가 크게 변동되어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공격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하는 성향입니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가치가 크게 변동되어 원금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섹션 4 - 파생상품등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경우

파생상품등이란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합니다.

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1년미만 (전혀없음포함)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만 65세 이상			
	만 65세 미만			

고객 확인

▶ 본인은 귀 은행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 은행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OO 개월 동안에는 은행이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은행에 통지하여야 은행이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고객성명: _____ 서명/인 대리인 성명: _____ 서명/인

<별지 제2호>_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법률에 따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이하 ‘은행’) 이 일반투자자인 고객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의 거래(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거래(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기명 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며, 파악한 정보는 고객의 투자(거래)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거래) 경험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적합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데 활용합니다.

또한 일반투자자인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고객에게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고객으로부터 기명 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정확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은행이 고객님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님의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의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유형	상장기업: _____	비상장기업: _____	개인사업자: _____
-------------	--------------------	---------------------	---------------------

I. 고객의 재무현황

자산 총계: _____ 외화자산 총계: _____
 부채 총계: _____ 외화부채 총계: _____
 연간 수출총액: _____ 연간 수입총액: _____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_____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고객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_____	_____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보유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 부서: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관련 경력: _____	관련 자격: _____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_____	중: _____	하: _____
	(전문가 수준):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 부서: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관련 경력: _____	관련 자격: _____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_____	중: _____	하: _____
	(전문가 수준):		
3. 고객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등이 모두 하려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_____	아니오: _____		
4. 고객님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고객님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_____	아니오: _____		

※고객이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은행과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_____	_____	조직명: _____ (명)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_____	_____	규정명: _____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_____	_____	전산시스템명: _____

VI. 금융거래수준

고객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종류	경험유무	건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 (FX Forward)	_____	_____	_____	_____
FX 스왑 (FX Swap)/ 통화스왑 (Cross Currency Swap)	_____	_____	_____	_____
구조화 통화 옵션 (Exotic FX Option): KIKO 등	_____	_____	_____	_____
이자율 스왑 (Interest Rate Swap)	_____	_____	_____	_____

구조화 이자율 옵션(Exotic Interest Rate Option)	_____	_____	_____	_____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_____	_____	_____	_____
상품 파생(Commodity)	_____	_____	_____	_____
기타 유형: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_____	_____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고객 확인

▶ 본인은 은행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은행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OO 개월 동안에는 은행이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은행에 통지하여야 은행이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작성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직위) _____ (담당자) _____ (인/서명)
(법인명) _____

은행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고객[_____]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 (담당자) _____ (인/서명)

고객이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이 조사표 사본에 은행이 기명 날인을 한 후 이를 고객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기명 날인(서명)한 이 조사표 원본은 은행이 보관합니다.

<별표 제 1호> 적합성 판단기준

구분		투자위험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5등급 (초저위험)	4등급 (저위험)	3등급 (중위험)	2등급 (고위험)	1등급 (초고위험)
투자자 투자성향 분류	위험회피형					
	보수형	권유가능	권유가능	투자권유 불가		
	안정성장형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성장형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공격형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별표 제2호> 적합성 판단기준(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

구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만 65세 이상	- 파생상품등 권유불가	- 원금손실률이 20%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만 65세 미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별표 제3호> 적합성 판단기준(장외파생상품)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개인	만 65세 이상	주의 등급	주의/경고 등급	주의/경고/위험 등급
	만 65세 미만	주의/경고 등급	주의/경고/위험 등급	
법인 및 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주의/경고 등급		주의/경고/위험 등급
	주권 상장법인	주의/경고 등급	주의/경고/위험 등급	

* 당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계약(경고등급)의 경우, 투자성향이 위험회피형 및 보수형인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상기표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과 관계없이 투자권유가 불가함

<별표 제4호> 장외파생상품의 위험도 분류 기준

주의	경고	위험
원본 초과 손실은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노란색 경고문(상품설명서 상단)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주황색 경고문 (상품설명서 상단)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적색 경고문 (상품설명서 상단)
금리스왑, 옵션매수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선물환)	주의, 경고 상품을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